

1. 개정이유

국민 이용 편의를 위해 저작권 변경등록 등 신청 시 등록증 제출의무를 삭제하고자 함.

또한, 저작권 대량 등록에 따른 수수료 할인 제도가 2009년에 도입되었으나, 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등 할인 기준이 엄격하여 수혜자를 확대하기 위해 등록 수수료 할인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이에 등록권리자만 동일해도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할인 제도를 확대하여 등록 수수료 부담을 완화시키고 등록 제도를 활성화하여 저작권 거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이와 더불어, 전자정부 시대 온라인 등록 확대를 위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등록부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신청 시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함.

그리고, 법정허락 이용 승인신청 서식의 의무 기재항목을 최소화하고,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등록사항의 변경·경정·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 신청 시 등록증 제출의무를 삭제함(안 제9조제1항제1호, 별지 제33호)
- 나. 등록권리자가 10건을 초과하여 등록 신청을 한 경우 추가 건당 수수

료를 할인해주도록 함(안 별표, 별지 제5호, 별지 제5호의2, 별지 제13호, 별지 제17호)

- 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등록부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신청시 수수료를 면제함(안 별표 제7호, 별지 제24호의2)
- 라. 법정허락 이용 승인신청 서식을 정비하고 작성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작성요령을 신설함(안 별지 제2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수수료 금액(제23조 관련)

구 분		수 수 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신청(신고하지 않은 경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신청(신고)한 경우
1. 법 제50조부터 제52조(법 제89조 및 제9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승인 신청		10,000원	
2. 법 제53조(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신청	프로그램인 경우	6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 건당 10,000원) (영문등록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등록증 추가 건당 3,000원)	5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 건당 10,000원) (영문등록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등록증 추가 건당 2,000원)
	프로그램 외의 경우	3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 건당 10,000원) (영문등록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등록증 추가 건당 3,000원)	2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 건당 10,000원) (영문등록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등록증 추가 건당 2,000원)
3. 법 제54조(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70,000원 (등록권리자가 10건 초과 신청시 추	60,000원 (등록권리자가 10건 초과 신청시 추

다른 등록신청		가 건당 15,000원) (영문등록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등록증 추가 건당 3,000원)	가 건당 15,000원) (영문등록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등록증 추가 건당 2,000원)
	프로그램 외의 경우	40,000원 (등록권리자가 10건 초과 신청시 추가 건당 15,000원) (영문등록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등록증 추가 건당 3,000원)	30,000원 (등록권리자가 10건 초과 신청시 추가 건당 15,000원) (영문등록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등록증 추가 건당 2,000원)
4.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신청		10,000원	9,000원
5.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		5,000원	4,000원
6. 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등의 신청 및 법 제105조제4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의 변경허가·저작권대리중개업의 변경신고		3,000원	2,000원
7. 법 제55조제7항(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부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신청		1,000원	면제

비고

- 가. 제3호에 따라 하나의 저작물에 대하여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을 동시(同時)에 등록신청하는 경우 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하나의 저작물에 대하여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 중 어느 하나를 이미 등록한 후에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 중 어느 하나를 등록신청하는 경우 나중에 등록신청하는 경우의 해당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 경우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이 동일인에게 설정·이전 등 변동이 되어야 하며, 그 설정·이전 등의 등록 사항은 그 사항별로 같은 내용이어야 한다.
- 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수수료는 신청물 1건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제2호 및 제3호에서 10건 초과 신청시 수수료 할인은 동 시행규칙 별지에 따른 동일한 신청서식을 이용하여 동시에 10건을 초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서식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저작물 [] 실연 [] 음반 [] 방송 이용 승인신청명세서 [] 데이터베이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① 일련번호		
② 제호(제목)		
③ 종류		
④ 형태 및 수량		
공표	⑤ 공표연월일	
	⑥ 공표국가	
	⑦ 공표방법	[] 출판 [] 복제·배포(판매) [] 인터넷 [] 공연 [] 전시 [] 방송 [] 기타 ()
	⑧ 공표매체정보	
권리자	⑨ 성명(법인명)	
	⑩ 전화번호	
	⑪ 주소	
⑫ 저작물등의 내용		

작성요령

- 이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저작물등이 여러 건인 경우 저작물등마다 개별로 작성하고 ① 일련번호를 붙여 기재합니다.
- 법 제50조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③ 종류에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차적저작물, 편집저작물 중 어느 하나를 기재합니다.
- ⑧ 공표매체정보에는 이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저작물등을 공표한 매체(출판사, 배포 대상, 인터넷 주소, 공연 장소, 방송사, 프로그램명 등)를 기재합니다.
- 법 제50조(제89조 및 제9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⑨ 성명, ⑩ 전화번호, ⑪ 주소에는 이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저작물등의 권리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고,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알 수 없음'으로 기재합니다.
- ⑫ 저작물등의 내용에는 이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저작물등에 대한 설명(개요, 줄거리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저작재산권
[] 배타적발행권
[] 출판권
[] 설정
[] 양도
[] 처분제한
[] 집권설정 등

등록신청서

※ []에는 V표를 합니다. ※ 반드시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저작물	① 제 호 (제 목)	※ 외국어의 경우 한글을 함께 기재합니다. ([] 여러 건 등록: 총 건)	
	② 종 류	※ 뒤쪽의 저작물 분류표 및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기재합니다.	
신 청 인	③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④ 국 적		⑤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⑥ 주 소		
	⑦ 전 화 번 호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⑧ 전자우편주소
	⑨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등 록 의 무 자	⑩ 국 적		⑪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⑫ 주 소		
	⑬ 전 화 번 호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⑭ 전자우편주소
대 리 인	⑮ 성 명 (법인명)		⑯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⑰ 주 소		
	⑱ 전 화 번 호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⑲ 전자우편주소

※ 등록을 거치기로 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등록권리자 (서명 또는 인)
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인)

한국저작권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명세서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3.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계약서 사본, 법원 결정문 등) 4.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 등이 2인 이상인 경우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 5. 저작물을 대상으로 등록하는 경우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 6.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공동권리자 중 일부의 지분 양도 시 공동권리자 전원의 동의서, 출판권 양도 시 복제권자의 동의서 등) 7.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8.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의 승낙서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수수료(1건)	
		신청물 10건까지	등록권리자가 10건 초과 신청시
		방문·우편: 40,000원 인 터 넷: 30,000원	초기 15,000원 추가건당: 15,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의 수급자: 없 음(연간 10건에 한합니다)	등록면허세 (교육세 포함, 1건) 저작재산권: 48,240원 배타적발행권·출판권: 24,000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저작물 분류표			
분 류	종 류(예시)	복제물 형태	비 고
어문저작물	시(현대시, 시조, 동시), 소설, 수필(에세이, 기행문, 서간문, 일기, 콩트), 교양물, 평론, 논문, 학습물, 기사, 칼럼, 연설(강연, 설교, 설법), 희곡, 시나리오, 시놉시스, 트리트먼트, 각본, 대본, 가사, 사용설명서, 브로셔, 기획안 등	인쇄물, 책, CD, DVD, USB 등	
음악저작물	대중가요, 순수음악, 국악, 동요, 가곡, 오페라, 관현악, 기악, 종교음악, 주제가 등	Tape, CD, DVD, USB 등	작사 - 어문 작곡 - 음악 편곡 - 2차적 작사·작곡 - 음악
연극저작물	무용, 발레, 무언극, 뮤지컬, 오페라, 마당극, 인형극, 측축극, 창극 등	비디오테이프, CD, DVD, USB 등	
미술저작물	회화(서양화, 동양화), 서예, 조소(조각, 소조), 판화, 모자이크, 공예, 응용미술(디자인, 삽화, 캐릭터, 도안, 그래픽), 만화, 로고, 포스터, 그림동화, 캐리커처, 십자수 도안 등	인쇄물, 사진, CD, DVD, USB 등	
건축저작물	건축물, 건축설계도, 건축물 모형	설계도서, CD, DVD, USB 등	
사진저작물	일반, 누드, 풍경, 인물, 광고 등	사진, CD, DVD, USB 등	
영상저작물	극영화,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기록필름, 광고, 게임 영상, 뮤직비디오, 교육용 동영상 등	비디오테이프, CD, DVD, USB 등	
도형저작물	(특수목적)지도, 도표, 설계도(건축설계도 제외), 모형, 지구仪, 악도 등	인쇄물, 책, CD, DVD, USB 등	
편집저작물	사진, 홈페이지, 문학전집, 시집, 신문, 잡지, 약보집, 논문집, 백과사전, 교육교재, 카탈로그, 단어집, 문제집, 설문지, 인명부, 전단, 기획안, 데이터베이스 등	인쇄물, 책, CD, DVD, USB 등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위 복제물 중 해당 유형	

작성요령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칸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① 제호: 등록하려는 저작물에 표시된 제호(제목)를 기재하되, 외국어는 한글 제호를 함께 기재하고, 동시에 여러 건의 저작물에 대하여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000' 외 'X건'으로 제호와 건수를 표시하고 여러 건 등록 표기란을 선택합니다. 예) '신홍길동전' 외 5건 ([V] 여러 건 등록 : 총 6건) ◆ 여러 건 등록 신청 시 신청서는 1부만 작성, 명세서는 저작물마다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② 종류: 위 저작물 분류표를 참고하여 분류 및 종류를 순서대로 함께 기재하되, 여러 건 등록신청 시에는 '별지 참조'로 표시하고 첨부서류 5.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기재합니다. 예) '어문저작물>시>동시', '음악저작물>대중가요>작사·작곡', '미술저작물>응용미술>캐릭터' ③, ④ 성명(법인명): 자연인은 그 실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정식 상호, 개인사업체는 <상호> 대표 000', 기타 단체는 단체명을 각각 기재합니다. 예) 자연인: 홍길동, 법인: 주식회사 활빈당, 개인사업체: 활빈당 대표 홍길동, 기타 단체: 활빈당 ◆ 등록권리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양수인, 채권자, 질권자 ◆ 등록의무자: 배타적발행권 설정자, 출판권 설정자, 양도인, 채무자, 질권설정자 ◆ 공동등록권리자나 공동등록의무자인 경우에는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을 첨부합니다. ⑤, ⑥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체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하고, 기타 단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등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www.cros.or.kr)을 통해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하나의 저작물에 대하여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을 동시(同時)에 등록 신청하는 경우 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하나의 저작물에 대하여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 중 어느 하나를 이미 등록한 후에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 중 어느 하나를 등록 신청하는 경우 나중에 등록 신청하는 경우의 해당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이 경우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이 동일인에게 설정·이전 등 변동이 되어야 하며, 그 설정·이전 등의 등록 사항은 그 사항별로 같은 내용이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권리변동 등의 등록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 처리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처리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처리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처리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뒤쪽)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설정
[] 양도
[] 처분제한
[] 질권설정 등
[] 저작인접권
[]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
등록신청서

* []에는 V표를 합니다. * 반드시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저작인접권	① 제 호 (제 목)	* 외국어의 경우 한글을 함께 기재합니다. ([] 여러 건 등록: 총 [] 건)	
	② 종 류	[] 실연 ([] 가창 [] 연주 [] 연기 [] 음성연기 [] 무용 [] 지휘 [] 기타([])) [] 음반 ([] 대중음반 [] 클래식음반 [] 국악음반 [] 동화 [] 기타([])) [] 방송 ([] 라디오 방송물 [] TV 방송물 [] 기타([]))	

신청인	등록권리자	③ 성 명 (법인명)	(한글) (영문)	(한자)
		④ 국 적	⑤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⑥ 주 소		
	등록의무자	⑦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⑧ 성 명 (법인명)	(한글) (영문)	(한자)
		⑩ 국 적	⑪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⑫ 주 소		
		⑬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⑭ 성 명 (법인명)	(한글) (영문)	(한자)
		⑮ 주 소	⑯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⑰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⑰ 주 소		

* 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등록권리자 (서명 또는 인)
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인)

한국저작권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실연 변동등록신청명세서,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5호서식의 음반 변동등록신청명세서,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6호서식의 방송 변동등록신청명세서 중 해당 변동등록신청명세서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3.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계약서 사본, 법원결정문 등) 4.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 등이 2인 이상인 경우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 5. 저작인접물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 6.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공동권리자 중 일부의 지분 양도시 공동권리자 전원의 동의서 등) 7.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8.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의 승낙서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수수료(1건) 신청물 10건까지 등록권리자가 방문·우편: 10건 초과 신청시 40,000원 추가건당: 15,000원 인 터 넷: 30,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의 수급자: 없 음(연간 10건에 한합니다) 등록면허세 (교육세 포함, 1건) 48,240원 저작인접권: 24,000원 배타적발행권: 24,000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요령

신청 방법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종질지(80g/m²)]

등록부 [] 열람 [] 사본발급 신청서

※ []에는 V표를 합니다. ※ 반드시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합니다.
(앞쪽)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등록부	1. [] 열람 [] 사본 발급	① 제 호(제 목) ② 등 록 번 호 ③ 청구 건수	
	2. [] 열람 [] 사본 발급	① 제 호(제 목) ② 등 록 번 호 ③ 청구 건수	
	3. [] 열람 [] 사본 발급	① 제 호(제 목) ② 등 록 번 호 ③ 청구 건수	
	신청인	④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⑤ 국 적	⑥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⑦ 주 소	
		⑧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⑨ 전자우편 주 소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⑩ 등록명의인과의 관계	[] 본인 [] 이해관계인 [] 기타()
	⑪ 용 도		
대리인	⑫ 성 명 (법인명)	⑬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⑭ 주 소		
	⑮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⑯ 전자우편주소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5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부의 [] 열람 [] 사본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저작권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등록신청인 본인 확인 서류(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1건) 방문·우편: 1,000원 인터넷: 면제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작성요령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 ① 제호(제목) : 등록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표시된 제호(제목)를 기재하되, 외국어는 한글 명칭을 함께 기재하고 동시에 여러 건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OOO와 X건'으로 명칭과 건수를 표시하도록 하며 여러 건 등록 표기 란을 선택합니다.

예) '주가 데이터베이스' 외 5건 ([V] 여러 건 등록 : 총 6건)

◆ 여러 건 등록 신청 시 신청서는 1부만 작성하되, 명세서는 데이터베이스마다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 ②, ⑥ 성명(법인명) : 자연인은 그 실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정식 상호, 개인사업체는 '<상호> 대표 OOO', 기타 단체는 단체 명을 각각 기재합니다.

예) 자연인 : 홍길동, 법인 : 주식회사 활빈당, 개인사업체 : 활빈당 대표 홍길동, 기타 단체 : 활빈당

◆ 등록권리자 : 양수인, 채권자, 질권자

◆ 등록의무자 : 양도인, 채무자, 질권설정자

◆ 공동등록권리자나 공동등록의무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목록을 첨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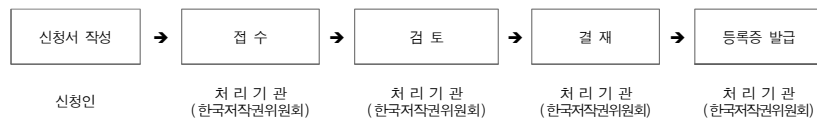
- ④, ⑩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체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 하되, 기타 단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www.cros.or.kr)을 통하여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변동 등의 등록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칸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 ◆ 열람: 해당 저작물의 등록 내용 및 권리변동 관계를 열람하기 위한 신청입니다.
- ◆ 사본 발급: 해당 저작물의 등록 내용 및 권리변동 관계를 확인하거나 등록부의 기재사실에 관하여 공적 문서를 발급받기 위한 신청입니다.

니다.

- ① 제호(제목): 등록된 저작물(실연·음반·방송, 데이터베이스)의 제호와 일치하도록 기재합니다.
- ② 등록번호: 등록부 열람 또는 사본발급을 받으려는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③ 청구 건수: 등록부 열람 및 사본 발급의 청구 건수를 기재합니다.
- ④ 성명(법인명): 자연인은 그 실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정식 상호, 개인사업체는 ‘<상호> 대표 000’, 기타 단체는 단체명을 각각 기재합니다.

예) 자연인: 홍길동, 법인: 주식회사 환빈당, 개인사업체: 환빈당 대표 홍길동, 기타 단체: 환빈당

- ⑥, ⑬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체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되, 기타 단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⑩ 이해관계인: 등록명의인은 아니지만 등록에 의해서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 ⑪ 용도: 등록부 열람 또는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용도를 기재합니다.

예) 법원제출용, 은행대출용, 보관용, 조달청제출용, 기타 등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www.cros.or.kr)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현행	개정안
제9조(변경등록 등 신청서 및 등록신청취하서) ①법 제55조의3 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경정·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이하 이 조에서 “변경등록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9조(변경등록 등 신청서 및 등록신청취하서) ①----- ----- ----- ----- ----- ----- ----- ----- -----.
1. <u>등록증</u>	1. <u><삭 제></u>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